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305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고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예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및 지역문화·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6조)
- 나.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예술인복지 증진사업 (안 제7조~안 제8조)
- 다.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안 제9조)
- 라.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0조)
- 마. 창작스튜디오 명칭, 위치, 기능 등(안 제11조)
- 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방법(안 제12조)
- 사.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 구성·운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24.~2020. 10.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수용

- 조례안 제6조제4항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창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이들 및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문화예술·지역문화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군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가치, 지역의 세시(歲時)풍속 등 계승할 만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지역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법인·단체(군 지역에서 문화예술·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군 외의 지역 소재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작스튜디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공간 확충 및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전념

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지역문화 향유

다. 관광·방문객들의 관광자원화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2. 「지역문화진흥법」
3. 「예술인 복지법」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지속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련 활동 장려 및 육성
2.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그 기반시설의 확충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② 모든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은 문화예술·지역문화 향유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평창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진흥사업과 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초자료의 실제적 확보를 위하여 지역문화·문화예술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하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및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의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진흥사업) ①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

조의2·제15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전문 인력 양성

다. 문화강좌 설치

라.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마. 문화산업의 육성

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2. 문화예술 행사·축제 개최 등 활성화

3. 국내외 교류·협력

4. 발굴·전승보존·창달 및 조사·연구

5.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진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복지의 원활한 증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장려 및 창작스튜디오 제공
2. 창작콘텐츠 육성
3. 작업환경 개선
4. 처우 및 지위 향상
5.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행사) ①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의 폭넓은 군민·관광객 등 참여를 위하여 관련 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행사의 효과적 개최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지역문화 행사 외에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중 공공시설의 법적 성격으로 설치·확충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정하는 해당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다.

제11조(창작스튜디오) ① 군수가 설치하는 창작스튜디오의 구분·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2.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등 제공
3. 각종 예술 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4. 아트샵 및 휴게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수행

③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숙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계약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등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 1.登記·등록된 문화예술법인·단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2. 군의 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예술인
3. 그 밖에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추천받은 유명 예술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해당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리위탁 외에도 필요할 경우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 또는 제4항의 대행사업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군수나 지역주민 등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법인·단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3조(자문단) ①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효율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실태조사 및 활용결과의 분석 반영
3. 지원대상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군수가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전문지식 및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자문단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14조(표창) 군수는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지원보조

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업무 및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작스튜디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문단의 회의공개·회의록작성, 단원의 위촉해제·수당지급 등. 이 경우 해당 조례에서 “자문단, 단장 및 단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5. 「평창군포상조례」: 제14조의 표창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진흥사업, 구성·운영 중인 자문단 및 관리위탁 중인 창작스튜디오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자문단 단원의 임기 및 관리위탁의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평창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② 평창군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창작스튜디오 구분·명칭 및 위치(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칭	위 치	비고
1	감자꽃스튜디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고길천로 105	
2	평창무이예술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길 233	
3	달빛생활문화센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길 7-1	
4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로 12-6	

[붙임1]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술인 복지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2250